교직원 복무 규정

제정 1995. 01. 04. 제13차 개정 2020. 05. 28.

제1장 총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범위)**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- 제3조(복무지침) 교직원은 교내·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하며 성실 근면하고 청렴하여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학생지도 및 일반 학사행정 업무처리를 능률적 으로 수행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제2장 복무

- **제4조(법규 준수의 의무)** 교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여 그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비밀준수의 의무)** 교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 야 하며 학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**제6조(청렴의 의무)**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. (개정 2009.12.18)
- **제7조(시설과 물품관리)** 교직원은 교내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다하여 보호하고 비품, 소모품 기타 물품 등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사무인수 인계)** ① 교직원은 보직의 변동, 전임 및 해임된 때에는 신·구임자 간에 그 담당 사무에 관한 문서, 물품, 금전 등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수, 인계를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② 전항의 사무인수, 인계는 발령 일자로부터 1주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**제9조(품위유지)** 교직원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**제10조(순환전보)** 직원의 업무능력 범위를 넓히고 자질을 개발하며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적 안목으로 대학행정 전반의 전문성을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동일 직종 간 순환전보를 3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03.3.1)
- 제11조(겸직금지) ① 교직원은 본직 외에 다른 직업을 겸하지 못한다. 다만, 타교 출강, 수강, 연수 또는 다른 기관의 비상임직으로 위촉이 불가피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겸직 허가를 받은 교직원은 담당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**제12조(보고의무)** ① 교직원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에 관한 돌발사건을 목격하거나

- 예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교직원은 전거, 전적 및 개명, 기타 수사기관 조사(음주, 사고, 범죄 등) 등 일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원은 총무팀, 교원은 교무·연구팀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12.18., 2019.06.25.)
- ③ 제6조 및 제12조 2항과 관련하여 상지대학교 교직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 지침을 따른다. (개정 2009.12.18)
- **제13조(문서, 재산의 관리)**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 및 재산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, 보관할 책임을 진다.
 -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허가 없이 타인에게 열람시키거나 복사 제공 또는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장 출장, 시간외 근무, 당직 및 비상근무

- **제14조(출장)** ① 교직원이 직무로 출장하려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03.3.1)
 - ② 출장용무의 변경으로 출장지 또는 출장일 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러나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출장한 교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출장의 명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출장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.
- **제15조(시간외 근무)** ① 직원은 필요에 따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할 수 있다.
 - ② 전항의 시간외 근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시간외근무규정에 따른다.
- **제16조(당직 및 비상근무)**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, 도난, 기타 사고의 방지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, 숙직, 수위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비상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전 항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16.08.10)

제4장 근무

- **제17조(근무시간)**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단, 2부 교학부는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. (개정 2007.2.12, 2016.08.10) ② 방학중 근무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18조(주 5일근무)** 직원은 주 5일 근무한다. 단, 학교가 비상사태 시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.
- **제19조(직장이탈)** ① 교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

- ② 교직원은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 단, 부서장 부재 시에는 부부서장 또는 팀장의 허가를 사전 득하여야 한다. (항 신설 2016.08.10., 2020.05.28)
- ③ 부서장(부부서장, 팀장)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무단이탈로 간주한다. (항 신설 2016.08.10., 2020.05.28)
- ④ 발병 등 기타 사유로 지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유서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(항 신설 2016.08.10.) (개정 2019.06.25)

제5장 휴일 및 휴가

- 제20조(유급휴일)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.
 - 1.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 (개정 2013.5.21)
 - 2. 본교가 정한 휴일
- **제21조(휴가의 종류)**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, 경조휴가, 특별휴가, 출산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로 구분한다. (개정 2003.3.1)
- **제22조(연가)** ①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03.3.1)
 - 1. 1년 미만: 1개월 개근시 1일 (개정 2013.11.18)
 - 2. 1년 이상~3년 미만: 15일 (개정 2007.2.12)
 - 3. 3년 이상~5년 미만: 20일 (개정 2007.2.12)
 - 4. 5년 이상: 25일 (개정 2007.2.12)
 - 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,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③ 모든 연가일수의 산정기준 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. (신설 2007.2.12)
 - ④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. (신설 2007.2.12)
- 제23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결근일수, 휴직일수,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직무상의 상병으로 인한 병가일수는 공제하지 않는다. (개정 2013.5.21)
 - ② 삭제 (2003.3.1)
 - ③ 제1항 중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른다. (항 신설 2013.5.21)
- **제24조(연가승인)** ① 연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부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주무부서에 연가를 청구할 수 있다. (개정 2007.2.12)
 - ② 연가사용 일수는 본인의 연가일수 내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비상사 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가 사용을 자제할 수 있다. (개정 2003.3.1)
 - ③ 삭제 (2007.2.12)
- **제25조(병가)**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. 다만, 동조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- 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- 2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
 - ② 병가원 신청시는 국·공립 종합병원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 (개정

2017.3.21)

(조개정 2003.3.1)

- **제26조(공가)**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 가를 준다.
 - 1. 병역법상의 의무를 수행할 때
 - 2. 공민권의 행사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업무 이외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
 - 3. 공적인 업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
 - 4. 천재지변,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 - 5.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
 - 6. 재해로 인하여 직원의 주거가 멸실되거나 대파됐을 때
- **제27조(여성보건휴가)** 여직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
[전부개정 2020.05.28]

- 제28조(출산휴가) ① 임신 중인 교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 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 - ② 교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휴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[전부개정 2020.05.28]

- 제29조(육아휴직) ① 교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 -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 -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
[전부개정 2020.05.28]

- 제30조(경조사휴가) 교직원이 경조사를 당하였을 때는 본인의 제출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다. (개정 2013.5.21)
- **제31조(포상휴가)** ① 교직원의 포상휴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- 1. 교직원 포상규정에 의한 포상 및 표창을 받은 때
 - 2.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
 - ② 총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 - ③ 직원인사규정 제23조(정년)에 의한 정년퇴직할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- **제32조(휴가의 청구, 허가)** 이 규정에 정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주무부서에 휴가 3일 전까지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

4.hwp

다. (개정 2003.3.1)

제33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 다만, 휴가일 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. (개정 2003.3.1, 2013.5.21)

제34조(휴가기간의 초과)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일 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.

제35조(지참·조퇴·외출) ① 직무 중 발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지참·조퇴·외출할 경우 지참·조퇴·외출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 (조 명칭 변경 및 개정 2016.08.10) ② 지참·조퇴·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 (조 신설 2003.3.1.)(개정 2016.08.10)

제6장 상벌

(장 신설 2014.4.9.)

제36조(포상) 교직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교직원포상규정에 따른다. (조 신설 2014.4.9)

- **제37조(징계사유)**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 - 1. 사립학교법, 법령, 정관 및 제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
 - 2.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자 (개정 2016.08.10)
 - 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
 - 4.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
 - 5. 공금을 유용 횡령한 자 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한 자 (호 신설 2016.08.10)
 - 6. 행정업무 및 학사일정을 방해, 비방 모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교직원, 학생을 교사 선동하는 행위를 한 자 (호 신설 2016.08.10)
 - 7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자 (호 변경 2016.08.10)
 - 8.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자 (호 변경 2016.08.10)
 - 9. 감독자로서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자 (조 신설 2014.4.9.) (호 변경 2016.08.10)
 - 10. (호 신설 2016.08.10.) (삭제 2020.05.28)
- 제38조(변상책임) 교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(조 신설 2014.4.9.)

제7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

(장 신설 2019.10.08.)

제39조(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)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·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
②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

는 아니 된다.

- **제40조(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)**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- 2. 지속·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
 - 3. 다른 교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- 4.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
 - 5.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
 - 6.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 - 7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
 - 8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
 - 9.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- **제41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** ① 총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"이라 한다)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 -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.
 -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
 - 2.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
 - 3.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
 - 4.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
 - 5.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
 - 6.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
 - 7.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
 -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교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제42조(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 조직) 교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·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(이하 "예방·대응 담당자"라 한다)을 1명 이상 둔다.
- **제43조(사건의 접수)**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·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예방·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.
- **제44조(조사)** ① 총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한다.
 - ② 조사는 예방·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.
 - ③ 조사가 종료되면 총장에게 보고한다.
 -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**제45조(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)** 총장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.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**제46조(당사자 간 해결)** 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,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, 총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한다.
 -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,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.
- **제47조(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)** 총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**제48조(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)** ① 총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.
 - ② 총장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5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54, 2007.2.12)

이 규정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457, 2009.12.21)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85, 2013.5.21)

이 규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807, 2013.11.18)

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69, 2014.4.9)

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7

4.hwp

부칙 (기획예산부-627, 2016.08.10)

이 규정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20, 2017.03.22)

이 규정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08, 2019.10.08)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6 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70, 2020.05.28)

이 규정은 2020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근무상황부

부 서 명 :

성명	기간 또는 일시				-1-1-1	결 재		
	부터	까지	시간	사유 또는 용무	연락처 (전화번호)			
	월 일 시 분	시 분	시 분					

※ 비 고

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, 이 경우 "부터"란은 일·시·분을, "까지"란은 시·분을 기재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